디지털 금융 정책 동향

개정「전자금융거래법」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2024. 9. 15. 시행)

개정「전자금융거래법」(이하 "**개정법**") 및「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하 "**개정령**")(이하 개정법과 개정령을 총칭하여 "**개정법령**")이 2024. 9. 15.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법령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을 중심으로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제도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불업 등록과 가맹점 범위에 관해서는 각각 6개월/1년의 유예기간이 설정된 만큼, 개정법령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시점을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새롭게 시행된 개정법령의 주요 내용과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선불업 등록대상 확대

개정법령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 규정 및 선불업자 등록 면제사유를 개정하여 감독 대상이 되는 선불업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 확대(개정법 제2조 제14호, 개정령 제3조(삭제))

규제 대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에서 ① "업종 기준"이 폐지되었고, ② 전자식으로 전환된 지류식 증표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되었습니다. 더불어, ③ 발행인과 같게 취급하던 특수관계인을 더이상 인정하지 않아 모·자회사에만 사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도록 정의를 확대하였습니다.

○ 선불업자 등록 면제사유(개정법 제28조 제3항 제1호, 개정령 제15조 제5항, 제6항)

가맹점 수와 관련하여, 하나의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경우에만 선불업자 등록이 필요 없도록 면제사유를 축소하였고, 발행액수와 관련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잔액이 30억 원

미만인 동시에 연간 총발행액이 5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만 등록이 면제되도록 하였습니다.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일정한 금융회사로부터 지급보증을 받거나 상환보증보험(이에 상당하는 공제 포함)에 가입하였다면 선불업 등록 의무가 면제된다는 내용은 유지하면서, 보증 또는 보험이 필요한 금액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선불업 등록 의무의 면제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선불업 등록 의무 면제기준 비교>

기준	변경 前	변경 後
가맹점의 수	10개 이하	1개(가맹점의 사업주가 동일)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	발행잔액이 30억 원 이하	발행잔액이 30억 원 미만 및 연간 총 발행액이 500억 미만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지급보증을 받거나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	변경 전과 동일

○ 선불업 등록에 관한 유예기간(개정법 부칙 제2조, 개정령 부칙 제2조)

다만, 개정법령의 시행으로 인해 새롭게 선불업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는 개정법령 시행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2025. 3. 15. 이내)에 선불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사점 및 유의사항

개정법령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가 확대되고 등록 면제사유가 축소되면서 선불업 등록 없이 전자적 형태의 포인트, 머니, 코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던 업체들이 새롭게 등록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선불업자 등록 유예기간의 만료 시점(2025. 3. 15.)까지 선불업자 등록을 준비하거나 서비스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금융감독당국은 법령해석을 통해 한 사업자가 여러 개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경우, 그 중 일부 또는 전부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가맹점이 각 1개씩만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가 법 제28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선불업 등록 면제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하여 등록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엄격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등록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충분한 법률 검토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선불충전금의 보호

개정법령은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운용방법 및 환급절차 등을 규정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보호하는 수단을 마련하였습니다.

○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개정법 제25조의2, 개정령 제13조의2)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전액"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해 예치, 신탁, 보증보험의 형태로 별도관리하도록 하면서 원칙적으로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을 양도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은 ① 예치의 경우 은행·특수은행·체신관서, ② 신탁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 또는 겸영금융투자업자, ③ 보증보험의 경우 보증보험회사로 한정하였습니다.

○ 선불충전금의 운용(개정령 제13조의3 제1호)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① 예금, ② 국·공·지방·은행채, ③ 지급보증증권, ④ CD, ⑤ RP, ⑥ MMF나 A등급 이상 회사채 등 그 외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와 같이 안전자산 범위 내에서 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선불충전금의 환급(개정법 제19조 제2항, 제25조의2 제7항, 개정령 제13조의5)

선불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가맹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축소하거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 전부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하도록 하여, 선불충전금의 환급 조건을 강화하였습니다. 환급 조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환급 관련 정보를 받아 이용자에게 선불충전금을 우선 환급하도록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시사점 및 유의사항

개정법령에 따르면,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 전액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해 별도관리하여야 하고, 별도관리되는 선불충전금은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되어야 합니다. 위 개정 내용은 유예 없이 시행되는 만큼, 현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고 있는 회사라면 회사의 선불충전금 관리방법이 개정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가맹점 범위 확대 및 행위규칙 신설

개정법령은 전자금융거래법상 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이용자가 실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일반 가맹점에 관한 정보 및 거래대행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 가맹점의 정의(개정법 제2조 제20호, 개정령 제4조의2, 제22조의4 제3항 제4호)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일반 가맹점 외에도 일반 가맹점을 위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자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상 가맹점에 포함하였고, 전자지급결재대행업자 또는 전자고지결제업자만이 위 가맹점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한정하였습니다.

○ 가맹점의 행위규칙 신설(개정법 제37조 제5항)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이 실제 재화·용역을 제공한 일반 가맹점의 정보를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하고, 거래대행에 관한 정보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 가맹점 범위에 관한 유예기간(개정령 부칙 제3조)

다만, 가맹점 계약 등 규제준수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가맹점 관련 내용은 개정법령이 시행되는 2024. 9. 15. 을 기준으로 1년이 되는 때부터(2025. 9. 15. 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시사점 및 유의사항

개정법령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 또한 가맹점의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고 있는 회사라면 가맹점 범위 유예기간의 만료 시점(2025. 9. 15.)부터는 가맹점으로 모집하려는 회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상 회사는 가맹점 범위 유예기간 만료 시점(2025. 9. 15.)까지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에 대한 등록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최근 금융감독당국은 "티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PG업 정의가 사실상 내부정산을 포함한 모든 정산업무가 포함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기 사업의 일부로서 대금을 수취하여 내부정산을 해주는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유통회사 등이 자기 사업의 일부로서 내부 정산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PG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바 관련 진행추이를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기타 주요 개정 내용

개정법령은 이외에도 선불업자의 행위규칙을 신설하였고, 선불업자가 소액후불결제업무를 겸영업무로 영위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 선불업자의 행위규칙(개정법 제36조의2, 개정령 제22조의4)

개정법령에서는 선불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행위규칙이 신설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일정한 재무건전성을 갖춘 선불업자만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할인 발행하거나 적립금을 지급하는 등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소액후불결제업무 영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① 승인요건(개정법 제35조의2 제1항, 개정령 제22조의2 제1항): 선불업자가 소액후불결제업무를 겸영업무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의 재무건전성을 갖추는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하였습니다.

② 업무범위(개정령 제22조의3 제2항, 별표1의2):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자별 최고 이용한도는 30만 원 이하, 사업자 총제공한도는 직전 분기 동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대가를 지급한 금액 합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설정하였습니다.

③ 경영건전성 관리(개정령 제22조의3 제2항, 별표1의2): 소액후불결제업무를 겸영하는 선불업자가 소액후불결제업무의 경영건전성 관리를 위해 신용카드사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자산의 건전성을 관리하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율촌의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율촌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Copyright 2024 Yulchon LLC. All rights reserved